

[별쇄본]

환경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방안

- 신규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20. 12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1. 국내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

-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농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이 포함된다. 발생한 폐기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수거할 것인지,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처리장소 누가 운반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 과정에는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즉,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에는 수거비용, 운반비용, 처리비용 등에 고려되어야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영농폐기물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배출자(농민)이 부담하고 있으나, 농민들에게 있어서 ‘비용소요’라는 수수료 납부는 생물성연소(노천소각)나 그대로 방치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에 농업비율이 높은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용 후 그대로 방치되거나 생물성연소되는 영농폐기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거비용 또는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 현재 국내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는 16개이다. 가장 먼저 제정된 곳은 2013년에 제정한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법규명은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다. 이후 관련 조례의 제정은 없다가 2017년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청양군 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고, 2018년에는 영주시 1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 2019년도에 8개 자치단체에서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 올해에는 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
- 시행중인 조례는 법규명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 수거 지원(10개) : 경기도, 경상북도, 나주시, 영주시, 예산군, 완주군, 이천시, 전라북도, 청양군, 충청남도,
 - 수거자 지원(3개) : 신안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충주시
 - 수거·처리 지원(2개) : 울산광역시, 홍천군
 - 처리 지원(1개) : 전라남도

○ 조례는 목적, 정의, 책무,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예산지원, 보상비 지급, 포상,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 1] 국내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0.12월 기준)

순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경기도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146호	2019.4.29
2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042호	2017.12.28
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01호	2020.3.6
4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25호	2013.12.24
5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15호	2018.3.5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73호	2020.1.31
7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16호	2019.8.8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82호	2019.12.26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1] 국내 영농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0.12월 기준) 표 계속

순번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9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13호	2019.7.9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07호	2019.9.27
11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5012호	2020.3.16
12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제4643호	2019.5.3
13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60호	2017.8.9
14	충청북도 충주시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22호	2019.7.19
15	충청남도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578호	2019.9.20
16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06호	2020.10.3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16개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지원되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정의된 ‘영농폐기물’의 의미와 ‘예산지원’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1.1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
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 ④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2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리필
름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 ④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3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 ④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4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페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
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필름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자(개인 또는 수거단체)에게 수거장려금 지급

1.5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 ④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6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 ④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7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리필름, 트레
이(모판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1.8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 ④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1.9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 ③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 빈병·빈봉지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자(개인 또는 수거단체)에게 수거장려금 지급

1.11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 영농폐기물 :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1.12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 농약빈병·빈봉지,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폐농업자재

1.13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 폐잔류농약·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디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 등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을 수거한자(개인 또는 수거단체)에게 수거장려금 지급

1.14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 ④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15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페비닐, 농약빈병 등의 폐 농업 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 ②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 ③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 ④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1.16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영농폐기물 : 영농행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용기, 부직포,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 차광망,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회
각종 비닐 등 수거·처리가 필요한 폐농업자재
- 예산지원 ①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②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사업

2. 괴산군 신규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차광막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